간호나라2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화재 및 범죄예방 등 노인요양시설의 보안과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해 식별된 사람으로,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간호나라2요양원에 설치·운영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적용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4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 : 시설장(또는 대표자)
2. 운영담당자 : 시설장(또는 대표자)
3. 모니터링담당자 : 시설장(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5조(CCTV 설치)
① 간호나라2요양원 내 CCTV는 총 23대 설치하였으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3대
2. 복도 3대
3. 침실 9대(특별침실 포함)
4. 현관(외부출입) 1대
5. 물리치료실 1대

6. 프로그램실 1대
7. 식당 1대
8. 사무실 1대
9. 비상재해대피실 1대
10. 상담실 1대

공용공간 9대(거실 4대, 주 출입구 1대, 복도 3대, 프로그램실 1대)

② 설치된 CCTV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및 거실 TV 옆에 안내판을 부착한다.

③ 영상자료 저장장치는 간호실에 설치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조작을 엄격히 제한한다.

④ 보호자(입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카메라 설치 및 동의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침실 촬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① 성능 : HD급(130만 화소)

②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③ 보관기간 : 60일

④ 저장화질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프레임

⑤ 저장장치 : 간호실에 있는 DVR

⑥ 열람장소 : 사무실

⑦ 삭제주기 : 보관기간 만료시 61일째 되는 날 자동삭제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7조(CCTV 사용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② 설치목적과 무관하게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8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설치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학술연구 목적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제공하는 경우

④ 급박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⑤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열람결정통지서)으로 통보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공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이용·제공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요청자 또는 기관명
3. 이용·제공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요청 정보 항목

④ 열람 제한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열람제한사유)에 사유·근거·불복 절차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불복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10조(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자는 10일 이내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인 화상정보만 삭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 보호조치)

① 영상 저장장치 설치 장소인 간호실은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며, 간호업무 외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통제한다.

② 접근 권한은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권한이 있는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열람·제공 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한다.

② 책임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캡스고객센터 ☎1800-6400).

제13조(열람가능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결정 시에는 결정통지서 송부 및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열람대장에는 구분(이용, 제공, 열람),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및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명과 함께 서명을 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②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③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할 때

④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열람요청 시 열람요청자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열람요청서(이용목적 및 처리정보 범위 명시)

③ 비밀유지서약서

제15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권한 없이 처리,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정상정보에 접근·열람·모니터링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의 모니터링 금지

제4장 보칙

제16조(사무의 위탁) 책임자가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별지 제 15호 서식 비밀유지의 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 **)**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td><td>처리기한
10일 이내</td></tr>
<tr><td rowspan="3">청구인</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정보주체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청구내용</td><td>청구영상
기록기간</td><td colspan="4">(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td></tr>
<tr><td>청구영상
설치장소</td><td colspan="4">(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td></tr>
<tr><td>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td><td colspan="4">(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td></tr>
<tr><td colspan="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td></tr>
</table>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정 정 · 삭 제 청 구 서</td><td>처리기간
10일 이내</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정보주체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정보주체의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정정(삭제)
청구의 내용</td><td>파 일 명 칭</td><td colspan="2"></td><td>열 람 일</td><td>년 월 일</td></tr>
<tr><td>정정(삭제)할
항 목</td><td colspan="4">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td><td colspan="3"></td></tr>
</table>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제 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① 수 신	_____귀하 (주소 :)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대표자**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 성 요 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 · 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 ○ **대표자 귀하**

[별지 제 15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 ○ ○ **대표자** 귀하